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보도자료**	http://www.mke.go.kr

'10년 12월 7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SW정책과 정대진 과장, 윤선영 사무관(2110-4771)/안홍상 사무관(4774)

「SW 대기업-중소협력사간 동반성장대회」 개최

- 현금결제 100%기업 4→6개사로 확대, 협력사 애로 전주기적 협력 강화 -

□ 안현호 지경부 제1차관과 김신배 상생협력위 위원장을 포함한 「SW 대중소 상생협력위원회」는 오늘 르네상스 호텔에서 **「SW 대중소 동반성장대회」를 개최하고 「SW 동반성장 실행계획」을 수립·확정**했다.

* 12.7일 7:30~8:30,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행사 상세개요 별첨)

○ 동 계획은 지난 9월 발표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SW 동반성장 대책반*'이 SW산업에 특화된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두달여간의 사례 수집 및 SW 대기업·중소기업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였다.

* (정부) SW정책과장, (대기업) 삼성 SDS·LG CNS·SK C&C, 롯데정보통신 (중소기업) 메타빌드·위세아이텍·우암코퍼레이션, (유관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등

○ 이 자리엔 삼성 SDS, SK C&C, LG CNS 등 6개 대기업을 포함한 36개 SW 대·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하여, **'SW 동반성장 실행계획'의 이행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동반성장 추진의 결연한 의지를 다졌으며,

○ SW 상생협력위원회 위원장인 **김신배 SK C&C 대표**는 "**제안서 작성단계의 서면계약 등은 거래질서 투명화·공정화를 위해 대기업이 앞장서 지켜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고, 중소기업 대표인 이재철 세기정보통신 사장은 "기존에 제시된 어떤 상생방안 보다도 구체적이며 동 대책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 공공기관의 SW사업 제값주기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공공기관 정보화사업 수발주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업계의 의견을 수렴중이다.

□ 삼성 SDS를 포함한 6개 IT서비스 대기업은 협력사의 교육·기술·금융·경영 등 **전주기적 애로지원을 위해 사별 동반성장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현재 진행중인 **협력사 지원프로그램을 양적·질적으로 확대**한다.

○ 하도급 대금 100% 현금결제 적용기업을 4개사에서 6개사로 확대, 보증보험증권 징구를 면제하는 금융지원을 포함하여, 협력사 신규채용자 교육 지원, 프레임워크 오픈소스 무료공개 등 다양한 협력사 지원프로그램이 확대·시행될 예정이다.

- 또한, 협력사 CEO를 대상으로한 법무·노무·세무 등 **경영세미나*** **실시, 대기업 전문인력의 협력사 지원 등도 확대**되며,

* (SK C&C) 상생 CEO세미나(5개월 과정), 상생 Mini MBA(중간관리자 대상 2개월, 2주)

○ 발주물량의 예측가능성 및 그룹사 내부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반기별 **「민간SW 수요예보제*」와 온라인 협력포털**도 운영한다.**

* '공공SW 수요예보제'와 연계, ('10) 6대 IT서비스 대기업 → ('11) 계열사로 확대
** 대기업 수·발주 정보, 경영 및 기술정보, 온라인 대금 지급 정보 등 제공

□ **안현호 지식경제부 차관은 격려사를 통해** “국가 정보화 인프라를 생산하고, 주력산업의 핵심 경쟁력인 **SW산업의 동반성장은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동북아 산업구조의 능동적 대응을 위한 필연의 과제**”라고 평가하고,

○ “어려운 시기일수록 대기업이 협력사를 중견기업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자양분을 줘야, 언젠가 협력사가 대기업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후원자로 역할할 수 있을것”이라고 격려했다.

○ 그러나, “업계 자율로 해결할 숙제로 남겨진 대기업간 저가수주 등 과열경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제2·제3의 후속 동반성장 실행계획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업계 자정 노력을 촉구하였다.

□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SW사업 도입관련 제도개편도 검토중이며, 동 제도개편 내용이 포함된 「SW동반성장 실행계획」 전문은 국민경제대책회의 관련 브리핑(12.8일(수) 14시 예정)시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참고 「SW 상생협력위원회 」 동반성장 대회 개요

1. 회의 개요

○ 목 적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10.9.29)에 따른 **대·중소 동반성장 실행계획 발표 및 합의서 교환**

○ **일시/ 장소 : 12. 7(화), 07:30～08:30,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

○ **참석자** : 총 40명

- 정부(3) : **안현호 제1차관**, 신산업정책관, SW정책과장
- 업계(33) : 김신배 상생위원장(SK C&C 대표) 등 IT서비스 대기업 대표(6), 협력사 등 SW중소기업 대표(27)
- 유관기관(4) : 정경원 NIPA원장, 박경철 SW산업협회 부회장, 이지운 ITSA 전무, 전산업협동조합 등

2. 세부 일정(안)

시 간		진행 내용	비 고
07:30～07:35	'5	■ 개 회	위원장
07:35～07:40	'5	■ **인사말씀**	**차관님**
07:40～07:47	'7	■ 2010년 상생위 추진 경과 보고	SW산업협회
07:47～08:02	'15	■ **SW 대중소 동반성장 실행계획 발표** – 정부 및 대기업 발표, 중기 대표 발언	SW정책과장· 대기업 임원
08:02～08:10	'8	■ 동반성장 이행점검계획 발표	NIPA SW진흥단장
08:10～08:15	'5	■ **합의서 교환 및 기념촬영**	**차관님·위원장 ·유관기관장**
08:15～08:27	'12	■ 환담 및 **맺음말씀**	전원·**차관님**
08:27～08:30	'3	■ 폐 회	전 원

참고 **참석자 명단**(정부측 생략)

구 분	기 업 명	성 명
대기업(6)	삼성 SDS	유병규 전무
	LG CNS	김영수 부사장
	SK C&C	김신배 부회장
	포스코 ICT	허남석 대표
	롯데정보통신	오경수 대표
	한화 S&C	진화근 대표
삼성 협력업체(3)	세리정보기술	백승호 대표
	인터솔루션테크놀로지	위귀복 대표
	세기정보통신	이재철 대표
LG 협력업체(3)	아이텍	유관선 대표
	낙스넷	이경성 부사장
	두잇시스템	신인용 대표
SK 협력업체(3)	제이앤에스정보기술	김광수 대표
	지앤비아이텍	박태준 대표
	대원씨앤씨	성준호 대표
포스코 협력업체(3)	고잉컴	이규택 사장
	새롬씨앤씨	박중규 대표
	뉴아이텍	오경식 대표
롯데 협력업체(5)	텐노드솔루션	이순 대표
	인버스	안병윤 대표
	씽크엠	조병직 대표
	애드캡슐소프트	정희현 대표
	아이컴피아	정혜영 대표
한화 협력업체(5)	씨엠인포텍	한웅식 대표
	우리티엔에스	서성길 대표
	타이호인스트	정희영 사장
	티에스라인시스템	안인엽 이사
	아이투맥스	김근모 대표
전문기업(6)	온더아이티	이병구 대표
	메타빌드	조풍연 대표
	이스턴네트웍스	유세권 대표
	웨이버스	김학성 대표
	위세아이텍	김종현 대표
	날리지큐브	유광일 부사장
유관 기관 / 협·단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경원 원장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박경철 부회장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이지운 전무
	한국전산업협동조합	구성회 전무

참고 **SW 대중소 상생협력위원회 개요**

□ 추진 경과

○ 「SW 상생협력위 추진 TF」 구성, 업종별 상생협력위원회 가입('09.11)

○ SW 대·중소간 **자율적 협력 분위기 조성, 체계적 지원을 위한 상시기관인 「SW 대중소 상생협력위원회」 발족('10.5.18)**

* 총 64개사 참여, 대기업별 상생이행계획을 바탕으로한 '상생실천규약'과 사무국·'상생이행지원단(IT서비스산업 협회)' 등 실행력을 갖춘 첫 공식기구 출범

○ 상생위 CEO 회의(9.9), 분과별 실무위 2회 등

□ 조직 구성도



* (글로벌 위원회) 대중소 동반 협의체 중심으로 해외시장 진출방안 등 논의
(생태계 위원회) 중소SW포럼 중심, SW진흥법·제도 개선방안 등 논의

□ 주요 기능 및 권한

○ **(기능)** 상생이행 프로그램 이행 점검·우수이행사 인센티브, 추가 협력과제 발굴·시행, **상생협력 저해*기업에 대한 개선 권고**

* ①산업계 경쟁력 약화가 예상되는 부적절한 수주경쟁행위, ②위원회가 의결한 상생협력방안 위배행위, ③ 기타 상생 협력 취지에 배치되는 행위

○ **(권한)** 위원사 가입·탈퇴 승인, **제명***, 위원사의 상생 협력 저해 행위 **진위 여부 조사** 등

* ①의무불이행, ②**부정당거래** 등으로 산업계 물의행위, ③목적 위배행위 기업으로 제명당할 경우 향후 **3년간 재가입 불허**